

환경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명령

이진국*

차 례

- I. 들어가며
- II. 환경형법의 예방적 효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대안
- III.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원상회복명령
- IV.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원상회복명령제도
- V. 원상회복명령의 도입방안
- VI. 마치며

[국문초록]

현재 환경범죄로 기소된 인원의 95% 이상은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약식절차에서 고지되는 벌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범죄의 척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과도한 자유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범죄를 범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과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하여 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범행의 결과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형법의 적극적 일반예방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가 환경범죄를 범한 후 그 결과를 원상회복한 행위를 양형인자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범죄의 불법의 정도에 따라 형사사범의 대응전략도 단계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범죄를 범한 이후에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범죄의 결과를 원상회복한 경우 이를 감경적 양형인자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자발적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업주인 경우 법원이 그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명령의 법적 근거는 형법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개별 환경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I. 들어가며

2013년도에 검찰이 환경범죄 사건으로 처리한 총 5,173명 중 기소된 인원은 3,762명(기소율: 72.7%)이었다. 이 중에서 통상의 형사절차로 기소된 인원은 186명(4.9%)이었음에 반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인원은 3,576명(95.1%)이었다.¹⁾ 검거된 사건의 대부분이 구약식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개별 수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매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약식절차에서 고지되는 벌금액수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²⁾를 보면, 오염원이 대기, 수질, 폐기물인 일반환경사건의 95% 이상에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들의 3건 중 1건은 250~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벌금액수가 낮은 이유는 형사사법기관의 환경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환경범죄를 범한 행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책임을 통찰할 수 없다는 전통적 도그마틱에 구속되어 기업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껏해야 양벌규정을 통하여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다른 법 분야³⁾와는 달리 환경범죄 분야에서는 그러한 벌금형 규정 자체도

1) 법무연수원, 2014 범죄백서, 265면.

2) 김성언·김정은,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21면. 이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생한 환경사건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3) 예컨대 상표법 제97조는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에 특유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환경범죄의 예방체계는 이미 제도상으로도 일정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각이 어려운 환경범죄 사건에 대한 수미일관한 단속과 단속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협력 등 실무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는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무기고에 다양한 제재수단들, 예컨대 환경범죄를 범한 기업에 대한 정부입찰 참가금지, 사회봉사, 기업공시, 원상회복, 특정한 의무사항 부과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응수단들 중의 하나인 원상회복명령의 제제적합성을 논증하면서 그 구체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환경형법의 예방적 효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대안

예방적 형법의 관점에서 원상회복제도가 현재의 환경형법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범죄에 대한 현재의 형사제재 부과실무가 환경형법의 예방적 효과가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1. 형벌의 기능으로서 적극적 일반예방

형법과 형벌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논자마다 다양한 관념에 기초해서 대답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적극적 일반예방론에 의하면, 형벌은 단순히 범죄자에게 응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법질서의 존속력과 관철력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의 유지와 강화’에 그 기능이 있다.

Jakobs는 질서의 유지와 관련하여 국가는 예컨대 전쟁이나 사변이 발발할 경우와

1. 제93조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이 적어도 단기간의 국가존립의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형벌로써 대응해야 하지만, 국가의 존립에 관한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형벌권에 대한 시민의 감수성이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형벌을 통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⁴⁾ 그러면서 형벌의 예방적 법익보호는 규범을 신뢰한 자가 그 신뢰를 확증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⁵⁾

Roxin은 Jakobs의 적극적 일반예방론을 재해석하여 적극적 일반예방론에 세 가지의 상이한 효과, 즉 ① 범충실예의 훈련을 가져올 사회교육학적으로 동기지워진 학습효과(Lerneffekt), ② 시민이 법이 관철되는 것을 볼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신뢰효과(Vertrauenseffekt), ③ 국민일반의 법의식이 범위반에 대하여 분노를 가라앉히고 행위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에 나타나는 평화초래효과(Befriedungseffekt)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 중에서 학습효과와 신뢰효과를 적극적 일반예방의 목적이라고 평가하였다.⁶⁾

그렇다면, 서두에서 언급한 환경범죄에 대한 현재의 사법처리구조가 적극적 일반예방의 목적인 일반국민의 학습효과와 신뢰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2. 환경형벌의 적극적 일반예방의 효과

현재의 환경형벌이 적극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소극적인 관점에서도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환경범죄자의 범행동기와 관련된 경제적 접근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범죄를 범하는 행위자들의 주관적 경향은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다. 즉, 환경범죄자의 대다수는 궁극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경제적 인간상(homo oeconomicus)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⁷⁾ 그렇다면, 경제학적인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잠재적

4) Jakobs, Strafrecht AT, 1991, Rn. 1.

5) Jakobs, a.a.O., Rn. 15.

6) Roxin, Die Wiedergutmachung im System der Strafzwecke, 1987, S. 48; derselbe, Strafrecht AT, 1997, §3 I, Rn. 27.

7) 환경범죄는 흔히 기업범죄의 한 유형으로 파악된다(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성환, 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43호, 2014, 68면 이하 참조). 기업범죄의 발생원인에 관한 중화기술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범죄자에게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규범의식과 가치관이 중화 내지 마비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여기서 중화기술(Techniques

범죄자가 환경범죄를 범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편익(=범죄실행)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 범죄자가 환경범죄를 범함으로써 감수할 수밖에 없는 비용(=범죄에 대한 처벌)을 증가시키는 것이 환경범죄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식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방식은 법정형의 상향조정만 의도하였을 뿐 편익요소가 주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비용차원에서 형사제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편익요소는 잠재적 범죄자가 불법을 범하는 것이 적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에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법령상 비용이 많이 드는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환경범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비용차원에서는 환경범죄 구성요건상의 벌금형의 상향조정과 재판에서의 고액의 벌금형의 선고 및 기존에 벌금형으로 처벌되던 행위에 대해 자유형(징역·금고)을 선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벌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정형의 상향조정, 즉 형사제재의 수위는 범죄예방에 그다지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범죄예방에 결정적인 것은 범행 이후의 범죄인의 발각의 위험에 있다고 한다.⁸⁾ 물론 환경범죄의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고액의 벌금형 선고와 관련하여 현재의 환경형법과 형사실무를 고려해보면 환경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벌금형은 독일 등 외국의 일수벌금제와는 달리 총액벌금제를 취함으로써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광범위하게 대체할 수 있고, 이론상으로도 벌금형의 액수를 법정형의 범위 속에서 최대한 중하게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형사재판실무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보다 경한 형벌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범죄 사건에 대한

of Neutralisation)이란 행위자가 범행을 부인하려고 하고, 불법을 최소화하려 하거나 피해자나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중화기술을 통하여 사회에서 승인된 규범과 가치는 점차 효력을 잃게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범죄자 스스로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범죄자는 형법보다 더 높은 행동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 규범에 따랐을 뿐이라고 중화시키게 된다. 예컨대 기업의 임직원이 뇌물을 주고 건설계약을 수주하는 것은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속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상세한 내용은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통권 81호, 2010, 72-73면 참조.

8) 일반예방의 효과에 대한 독일의 대표적인 경험적 연구로는 Schöch, Empirische Grundlagen der Generalprävention, in: FS-Jeschek, 1985, S. 1098 ff 참조. 요약된 서술로는 Streng, Strafrechtliche Sanktionen, 2001, Rn. 53-60.

기존의 벌금양형의 실무를 고려해보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나아가 기존에 벌금형으로 선고되던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양형기준이 법원의 기존에 선고해왔던 양형실무를 기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자유형을 통한 위협도 그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비용요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수위를 높일 것이 아니라 형사제재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적어도 잠재적 범죄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불법을 선택한 것이 채산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수질오염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하여 유죄판결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고 그 밖의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하여 환경범죄를 범할 동기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고, 적어도 지금까지 비용요소인 벌금형을 이미 자신의 계산속에 넣어두었던 잠재적 범죄자에 대하여 환경범죄를 단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다.

3. 검토

환경범죄의 처리에 관한 현재의 형사제재 실무를 보면 적극적 일반예방에서 말하는 학습효과와 신뢰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범죄 사건의 9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단되고 그 벌금액수도 대부분 300만 원 이하에 머물고 있는 형사사법의 현실이 적극적 일반예방에서 요구하는 “범죄는 저지를 것이 되지 못한다.”는 규범명확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도 환경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형성되어 온 국민의 도덕성과 감수성이 제재부과 단계에서 아무런 흔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 일반예방에서 의미하는 일반국민의 학습효과와 신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제재(특히 벌금형)의 수위를 상향조정하는 것 이외에 형사제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몰수·추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범죄로 인하여 획득한 수익을 박탈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상회복제도는 형사제재의 다양화의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다.

Ⅲ.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원상회복명령

형법상 원상회복은 전통적인 형벌(자유형, 벌금형)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이다. 환경범죄의 예방과 관련하여 원상회복명령이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논의해 보아야 한다.

1. 원상회복의 의의

형법적 맥락에서 원상회복이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내지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좁게 이해하면 원상회복은 원래의 상태를 재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이미 기존의 상태가 파괴 내지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금전에 의한 피해배상의 형식을 띤다. 그리고 원상회복은 오늘날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여기서 회복적 사법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양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⁹⁾ 이 점에서 회복적 사법과 그 구체적인 내용인 원상회복은 화해가 가능한 개인적 피해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은 환경매체(수자원, 토양, 대기, 동·식물)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면서, 부차적으로 인간을 위한 환경의 유용성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보편적 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그 보호의 정도도 주로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하여 가벌성의 성립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 점에서 환경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없는 범죄로 이해된다.¹⁰⁾ 환경범죄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개별적인 피해자

9) 회복적 사법의 개념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이진국·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57-72면; 이호중,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제9권 1호, 2001, 29-32면 참조.

10) 다만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여야 범죄가 성립된다. 이 점에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일부 구성요건은 피해자있는 범죄로 파악할 수 있다.

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법은 범죄구성요건에서뿐만 아니라 그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에서도 범행과 행위자에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 피해자의 존재 여부라는 우연성에 방향을 설정해서는 안된다.¹¹⁾ 따라서 피해자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사회를 위하여 범행결과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의미의 원상회복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상징적’이란 원래 원상회복제도가 예컨대 상해죄나 절도죄 등과 같이 피해자있는 범죄에서 개별적인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경우 환경범죄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금부내용은 예컨대 환경범죄의 결과인 폐기물의 단순한 제거에서부터 환경공익시설에의 금전기부, 환경관련재단의 설치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2. 개별 환경법상의 개선명령제도

일정한 위반행위를 이전의 상태로 복구 내지 개선시킨다는 의미로 원상회복의 개념을 이해하면 현행 개별 환경법에서도 원상회복과 유사한 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개별 환경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선명령제도가 그것이다. 예컨대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4항은 개선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도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

¹¹⁾ Schöch, Empfehlen sich Änderungen und Ergänzungen bei den strafrechtlichen Sanktionen ohne Freiheitsentzug?, 1992, S. 74.

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제도는 환경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개별 환경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선명령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시설이나 조치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달리한다. 특히 원상회복은 당해 환경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피해를 직접 제거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의미함에 반해, 개선명령제도는 특정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설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해지는 단순한 행정상의 조치라는 점에서 환경범죄를 전제로 한 법적 효과(형사제재)인 원상회복명령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개선명령은 환경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기존의 시설이나 조치를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형법상 원상회복과 민법상 손해배상

그런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원상회복은 형법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를 두고 과거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상회복제도를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은 한편으로는 민법과 형법의 경계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상회복제도의 일반예방적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민·형 분리의 선구자인 Binding에 의하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정당하게 근거지워지지 않은 상태를 법질서의 적합한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인 반면, 형벌은 원상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원상회복은 항상 피해자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반면 형벌은 형벌부과의 의무를 이행할 국가에 제공된다고 이해하였다.¹²⁾ Hirsch도 형법과 민법은 단순한 명칭상의 차이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근거한 차이가 있다는 전제에서 민사 불법행위법은 행위자가 야기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조정하는 것임에 반해 형법에서는 이러한 손해조정을 뛰어넘는 해악부과(즉, 형벌부과)를 본질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³⁾ 그러면서 Hirsch는 형법에 원상회복제도가

¹²⁾ Binding, Die Normen und ihre Übertretung, Band I, 1922, S. 286, 288.

¹³⁾ Hirsch, Zur Abgrenzung von Strafrecht und Zivilrecht, in: Bockelmann (Hrsg.), FS-Engisch,

도입된다면 예컨대 행위자가 절취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원상 회복제도는 형벌의 목적인 일반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로 나갈 동기를 부여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¹⁴⁾

그러나 엄격한 민·형 분리사상은 형벌의 해악부과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해악부과 그 자체를 형벌의 독자적인 과제로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절대적 형벌이론에서 유래된 사고라는 점에서 예방사상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한다.¹⁵⁾ 어떠한 사항을 형벌의 관할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우리의 약속에 달려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환경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배상을 뛰어넘어 환경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는 원상회복사상과 매우 잘 조화된다. 또한 환경범죄의 경우 그 불법성이 경미하거나 중간정도로 중한 경우에 현재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행위자나 일반국민의 관점에서는 벌금형을 납부하는 것 보다 환경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원상회복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IV.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원상회복명령제도

미국에서는 원상회복명령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법상 원상회복명령제도의 내용과 실무의 처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미국에서는 1909년의 연방대법원 판결¹⁶⁾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

1969, S. 314, 318.

14) Hirsch, Wiedergutmachung des Schadens im Rahmen des materiellen Strafrechts, ZStW 102(1990), S. 536, 545.

15) Sarhan, Wiedergutmachung zugunsten des Opfers im Lichte strafrechtlicher Trennungsdogmatik, 2006, S. 42.

한 이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연방차원에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수많은 범죄구성 요건을 신설하였다. 판례가 전개한 기업의 형사책임 요건으로는, 기업의 임직원이 범죄를 범해야 하고, 임직원에게 의한 범죄의 실행이 근로관계에서 범해져야 하며,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기업에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고의로 범죄가 실행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형법적 수단의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환경범죄는 채산성이 없다”는 모토에 따라 다양한 형사제재를 통하여 환경범죄에 대응하였고, 일부 사례에서는 강력한 형사제재를 부과하여 응보적 효과를 추구하였다.¹⁷⁾ 특히 1980년대 말 내지 1990년대 초에 연방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범죄유형,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범죄적 에너지 등을 고려하여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 이윤획득의 동기로 범하는 환경범죄의 경우 강력한 자유형과 과도하게 많은 벌금형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⁸⁾ 또한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던 전통적인 형사제재인 벌금형 이외에 이른바 입찰참가제한제도, 사회봉사, 원상회복, 기업공시, 환경재단의 설치 또는 지원, 특정한 의무사항 부과를 조건으로 하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기업보호관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사제재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벌금형과 그 밖의 형사제재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처벌 필요성에 부응하도록 하고 있다.

2. 연방양형기준상 원상회복명령

1987. 11. 1.부터 시행된 연방양형기준법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8장에서는 특별히 기업에 대한 처벌(이른바 ‘기업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기업양형기준은 다시금 원상회복(제8장 제B부), 벌금형(제8장 제C부), 보호관찰(제8장

¹⁶⁾ New York Central & Hudson River Rail Road Co. v. U.S., 212 U.S. 481(1909).

¹⁷⁾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를 지니는 것은 1990년에 발효되었던 오염소추법(Pollution Prosecution Act)이었는데, 이 법은 미국 환경보호청에게 형사제재 부과권을 인정하였다. Hedman, Expressive Functions of Criminal Sanctions in Environmental Law, 59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889, 1991, p. 894.

¹⁸⁾ Cohen, Environmental Crime and Punishment, 82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054, 1992, p. 1088.

제D부) 등 3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⁹⁾

기업에 대한 양형의 과정에서 법원은 일차적으로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²⁰⁾ 여기서 원상회복은 기업이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를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형의 본질적 요소이다. 원상회복은 오로지 손해조정의 목적에만 기여하는 것으로서 기업에 대한 벌금형 부과와 완전히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방양형기준은 특히 개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원상회복 관련 규정을 이행한다. 1984년의 형법개정은 원상회복을 양형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규정하였다.²¹⁾ 현재 미국의 연방법에서는 다수의 연방범죄에 대한 법원의 원상회복 심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²²⁾ 이러한 사안에서는 비록 해당 법률이 법관에게 재량적으로 원상회복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서 특별한 원상회복명령(restitution order)을 선고해야 한다.²³⁾ 다만, 피고인의 원상회복의무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상회복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건에서 법원은 원상회복을 보호관찰의 부담사항으로 명할 수 있다.²⁴⁾ 이 경우 보호관찰의 부담사항으로서의 원상회복을 개선명령(remedial order)이라 부른다. 한편, 연방양형지침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미 원상회복이 명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²⁵⁾ 이것은 특히 환경범죄와 보건식품범죄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이 광범위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이것 이외에 연방양형기준 제8장은 제A부에서 일반적인 적용방식, 제E부에서 몰수·추징·비용 등에 관한 문제, 제F부에서 보호관찰 의무사항 불이행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 §8 B USSG.

21) 18 U.S.C. §3553 (a)(7).

22) 예컨대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폭력범죄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재산범죄(18 U.S.C. §§3556, 3663A), 성범죄(18 U.S.C. §§2248, 2259), 가정폭력범죄(18 U.S.C. §§2264) 등의 경우에는 법원은 의무적으로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 그 밖의 범죄(18 U.S.C. §§3556, 3663)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적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3) §8 B 1.1 USSG.

24) §8 B 1.2 USSG.

25) §8 B 1.2 Cmt. USSG.

3.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와 원상회복

미국에서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사제재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벌금형이지만, 원상회복명령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연방양형기준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은 그것 자체만으로 독자적으로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에 병과하여 선고될 수 있다.

<원상회복명령(2005~2014)>²⁶⁾

회계년도*	기업 유죄판결 총계(건수)	환경범죄 유죄판결** 총계(건수)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 중 벌금과 원상회복의 점유			
			원상회복만선 고	벌금만 선고	벌금과 원상회복 병과	기타***
2005	45	9	2	6	1	0
2006	217	41	0	30	7	4
2007	196	51	2	33	12	4
2008	198	44	4	25	10	5
2009	177	41	2	31	7	1
2010	148	35	0	31	4	0
2011	160	49	2	32	12	3
2012	187	58	0	42	10	6
2013	172	42	3	32	7	0
2014	162	33	2	21	9	1

* 회계년도란 전년도 10.1.부터 당해 년도 9.30.까지를 말함(예컨대 2005년의 경우 2004.10.1.~2005.9.30.까지를 말함).

** 기업에 대하여 환경범죄로 벌금과 원상회복만 선고된 총건수를 말함.

*** 기타란 벌금형도 원상회복도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위의 표는 최근 10년간(2005~2014) 기업에 대하여 선고된 형사제재 중 벌금형과 원상회복명령이 선고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에 대하여 벌금형과 원상회복명령이 선고된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벌금형과 함께 원상회복명령이 선고된 건수도 적지 않고, 원상회복명령만 선고된 사례도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²⁶⁾ 출처: USSC, Sourcebook of Federal Sentencing Statistics(<http://www.ussc.gov/research-and-publications/annual-reports-sourcebooks/annual-reports-sourcebooks-archives>: 방문일: 2015.5.18.)

V. 원상회복명령의 도입방안

환경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원상회복명령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독자적 형사제재로 도입할 것인지, 부수적 제재로 도입할 것인지, 양형인자로 고려할 것인지 등 그 구체적 도입방식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1.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에서 원상회복명령제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실행 또는 형의 집행을 유예라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이 범한 과거의 불법을 상쇄하고,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정한 처분을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 12. 29.자 개정형법에서는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2011. 3. 25. 국회에 제출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 제1항은 현재의 집행유예 조건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더하여 피해회복명령도 새로운 조건으로 열거하였다. 물론 이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에 있지만,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명시된 개정내용은 그 자체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장기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탄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집행유예의 조건 중의 하나인 피해회복명령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의 여부이다. 형법일부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회복명령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범죄의 피고인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 명시된 제59조 제1항의 입법이유에 의하면, “..... 하지만 피해회복명령은 금전적 배상만이 아니라 정신적 위로 등 정신적 원상회복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부작용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명령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결과적 정의실현에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회복적 사법이라는 전 세계적 형사정책적 동향에도 발맞추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어 피해회복명령을 형사제재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입법이유에 의하면, 피해회복명령제도는 구체적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구체적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범죄의 영역에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물론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 제1항이 단순히 ‘피해회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피해자없는 범죄에까지 확대시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정부(법무부)가 구상한 피해회복명령제도 그 자체를 보면, 피해회복명령제도의 적용범위가 너무 좁게 파악되고 있다. 원상회복제도의 목적이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법질서의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환경범죄, 마약류범죄, 도박범죄 등과 같은 피해자없는 범죄에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범죄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입법론적으로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피해회복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 원상회복명령제도의 도입방식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원상회복명령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식은 독자적인 형사제재, 집행유예의 조건, 벌금형에 대한 병과형 등 크게 3가지로 구상해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원상회복한 사실을 형법 51조의 ‘범행이후의 태도’로 보아 양형인자로도 고려할 수 있다.

원상회복명령제도를 독자적인 형사제재로 입법하는 방식은 경미범죄에서 그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미범죄의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국가형벌권의 과잉대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상회복만으로도 법질서의 재건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법정형이 과도하게 상향조정되어 있고, 형벌감수성이 미약한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원상회복명령을 독자적 형사제재로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인 장애로 다가올 수 있다.

원상회복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입법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법무부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같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이지만, 환경범죄를 범하는 행위자가 기업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종업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²⁷⁾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2011.4. 68면.

않다. 다만, 사업주가 환경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상회복의 가장 바람직한 도입방식은 벌금형에 병과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환경범죄 처리실무를 고찰해보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고, 선고되는 벌금액수도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예방적 효과를 노릴 수 없다. 이 점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벌금형에 병과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속죄의식도 일깨워줌과 동시에 적정한 형벌권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행위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환경범죄자가 환경범죄로 인하여 발행한 손해를 제거한 경우에 이를 양형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범죄의 영역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환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심 범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시점까지 피고인이 환경범죄로 인하여 유발된 손해를 완전하게 제거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결과불범이 감경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원상회복행위를 특별양형인자²⁸⁾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3. 원상회복명령제도의 체계적 위치

문제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원상회복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이를 형법에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환경법에 그 근거규정을 둘 것인지의 여부이다.

형법이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기본법틀이고, 원상회복명령제도는 환경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사제재이기 때문에 원상회복명령제도의 체계적 위치는 원칙적으로 형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환경법이나 형법은 동일하게 법률이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에서는 특별법에 형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28) 양형인자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 특별양형인자는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를 말한다. 상세한 내용은 범원행정처, 2014 양형기준, 507면 참조.

형법의 상징적 성격으로 인하여 형법 개정이 쉽지 않고,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원상회복을 좁게 이해하고 있어 환경범죄의 영역에서는 그 적용이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환경범죄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환경법에 원상회복명령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VI. 마치며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범죄 관련 통계자료와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출발해 보면, 대부분 환경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량도 낮은 액수의 벌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범죄의 척결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양형실무를 벗어나 행위자에게 과도한 자유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범죄를 범한 사업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과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하여 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범행의 결과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범죄의 척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로써 적극적 일반예방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행위자가 환경범죄를 범한 후 그 결과를 원상회복한 행위를 양형인자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범죄의 불법의 정도에 따라 형사사법의 대응전략도 단계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범죄를 범한 이후에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범죄의 결과를 원상회복한 경우 이를 감경적 양형인자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자발적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업주인 경우 법원이 그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명령의 법적 근거는 형법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개별 환경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성언 · 김성은,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김성환, “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43호, 2014.
-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2011.4.
- 법무연수원, 『2014 범죄백서』.
- 법원행정처, 『2014 양형기준』.
-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통권 81호, 2010.
- 이진국 · 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이호중,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제9권 1호, 2001.
- Binding, Karl: Die Normen und ihre Übertretung, Band I, 4. Aufl., Meiner · Leipzig, 1922.
- Cohen, Mark A.: Environmental Crime and Punishment, Legal/Economic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on Enforcement of Federal Environmental Statutes, 82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054, 1992.
- Hedman, Susan: Expressive Functions of Criminal Sanctions in Environmental Law, 59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889, 1991.
- Hirsch, Hans-Joachim: Wiedergutmachung des Schadens im Rahmen des materiellen Strafrechts, ZStW 102, 1990.
- Hirsch, Hans-Joachim: Zur Abgrenzung von Strafrecht und Zivilrecht, in: Paul Bockelmann (Hrsg.), Festschrift für Karl Engisch zum 70. Geburtstag, Klostermann · Frankfurt am Main, 1969.
- Jakobs, Günth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Walter de Gruyter · Berlin u.a.,

1991.

- Roxin, Claus: Die Wiedergutmachung im System der Strafzweck, in: H. Schöch(Hrsg.), Wiedergutmachung und Strafrecht, Symposium aus Anlaß des 80. Geburtstags von Friedrich Schaffstein, Neue Kriminologische Studien, Bd. 4, Fink · München, 1987.
-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3. Aufl., C.H.Beck · München, 1997.
- Sarhan, Amr: Wiedergutmachung zugunsten des Opfers im Lichte strafrechtlicher Trennungsdogmatik, Plädoyer für eine opferorientierte Neuausrichtung des Strafgrundes, Bwv ·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 Berlin, 2006.
- Schöch, Heinz: Empfehlen sich Änderungen und Ergänzungen bei den strafrechtlichen Sanktionen ohne Freiheitsentzug?, Gutachten C zum 59. Deutschen Juristentag, Hannover 1992, C.H.Beck · München, 1992.
- Schöch, Heinz: Empirische Grundlagen der Generalprävention, in: Theo Volger(Hrsg.), Festschrift für Hans-Heinrich Jescheck zum 70. Geburtstag, Duncker&Humblodt · Berlin, 1985.
- Streng, Franz: Strafrechtliche Sanktionen. Die Strafzumessung und ihre Grundlagen, Kohlhammer · Stuttgart, 2001.

[Abstract]

Restoration Order as New Criminal Sanction against the Environmental Crime

Lee, Jin Kuk
(Professor, Ajou University)

It is true that more than 95 percent of accused of environmental crimes are handled in summary proceedings and are sentenced to relatively modest amount of fines. For this reason, it is hard to earn trust of the general public in eradicating environmental crimes. However, it is also not appropriate to sentence those offenders to excessive punishment of restricting physical freedom for the purpose of gaining trust of people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crimes and criminal justice. In the long term, what might be more effective to prevent environmental crimes is either restoration order by the court under the condi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or cleaning-up order along with restoration and fines. Those measures would serve to main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law to prevent such crimes in advance.

In this regard, effort by offenders to clean up contaminated sites and restore them to the original state should be considered in sentencing. Responses to those crimes under criminal justice should be differentiated on severity of crimes. First, what would be considered as mitigating factors in sentencing includes restoration of the contaminated site voluntarily taken by the offender. If the offender does not make any effort to restore the site, the court may order him/her restoration along with fines. The court, at own its own discretion, would order restoration under the condition of granting the corporate defendant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n this case, legal grounds of restoration order might be provided either in criminal law or the environmental law.

주 제 어: 환경범죄, 기업범죄, 원상회복명령, 개선조치명령, 환경법
Key Words: Environmental Crime, Corporate Crime, Restitution Order, Remedy Order, Environmental Law